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8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정준호·복기왕·박희승

이춘석 • 이학영 • 윤종군

박용갑 · 안태준 · 임호선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 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전기차 화재 공포'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주차장 개방을 둘러싸고 주민간 논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 의해 발생하지만 아직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전기차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 · 경고하는 기능)으로 배터리 이상 징후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차주 동의

하에 소방서에게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지목되고 있음.

정부는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들이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사용 중인 전기차 중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는 차종이 23종이나 되고, 29종의 차종은 알림 서비스가 아예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BMS 실시간 알림 및 주차 중 작동 기능 장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통보하는 장치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	
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u>자동차</u>	<u>자동차 운행</u>
<u>운행 안전장치</u> 를 장착한 자동	안전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
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	<u>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u>
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	
다.	
<u><신 설></u>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
	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
	게 알려주는 장치
<u><신 설></u>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
	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자
	에게 상시적으로 통보하는 장
	<u>치</u>
<u><신 설></u>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장치</u>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u><삭 제></u>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